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08

발의연월일: 2020. 10. 27.

발 의 자: 강기윤·김도읍·김희국

윤영석 · 김예지 · 이달곤

구자근 • 박성중 • 엄태영

이명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현금이나 채권으로 보상받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양도대금 대신 조성토지로 대토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5%를 감면해 주고 있음.

그러나, 공익사업 수용 등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것은 해당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이행되는 조치로서 특별한 희생이 수반된다는 점과,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은 주변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보상액만으로는 대체토지 매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조세혜택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

함으로써 해당 주민의 세부담과 공익사업의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7조 및 제133조, 제77조의2 삭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100분의 100"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4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6항을 준용한다"를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제77조의2를 삭제한다.

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77조, 제77조의2"를 "제77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77조, 제77조의2"를 "제77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를 "제70조 또는 제77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7조 및 제1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정 혂 행 개 아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 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 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 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 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 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 득한 토지등을 2021년 12월 31 -----2025년 12월 31일 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 -----100분의 1 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00-----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 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 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 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 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 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1. ~ 3. (생략)
- ②·③ (생 략)
- ④ 제1항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의 100분 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 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 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 의 100분의 15(만기가 5년 이 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 ⑤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 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4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6항을 준용한다.
- ⑥·⑦ (생 략)
- ⑧ 제1항과 제4항을 적용하는 <삭 제>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u>삭</u> 제>

5	 	 		
	 	 	-준용	- 한
<u>다</u> .				

⑥·⑦ (현행과 같음) <삭 제> 경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 기로 한 특약의 내용, 특약을 위반하였을 때 그 위반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법,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⑨ (생략)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 | <삭 제> 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 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 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 한 토지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 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 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 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현행과 같음)<삭 제>

-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대토보상 명세를 국 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 적 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거주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거 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1. 대토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반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

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 대 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

- ④ 제1항에 따른 감면이나 과 세이연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 청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대토보상의 요건 및 방법, 감면받거나과세이연받은 세액의 납부 사유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지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 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 조의4까지, 제70조, <u>제77조, 제7 7조의2</u>,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 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 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	취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u>제77조</u>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u>제77</u> 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 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 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 세기간의 참면받을 양도소득 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가. (생략)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1
<u> </u>
2
,,
가. (현행과 같음)
나

부터 제69조의4까지, <u>제70</u> <u>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u>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 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u>제70</u>
조 또는 제77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